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4. 5.] [대통령령 제34390호, 2024. 4.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작황 부진 등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류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바나나, 파인애플 등 7개 물품의 한계수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고, 체리·키위 등 5개 물품에 대해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390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로 한다.

별표 6 0803.90의 한계수량란 중 "150,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04.30의 한계수량란 중 "40,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04.40의 한계수량란 중 "1,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04.50의 한계수량란 중 "14,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05.40의 한계수량란 중 "8,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고, 같은 표 0811.10의 한계수량란 중 "6,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하며, 같은 표 0811.90의 한계수량란 중 "15,000톤"을 "수입전량"으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5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9]

2024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한계수량
호	소호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50	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	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2	체리			
0809	29	기타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50	키위프루트(kiwifruit)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5	수입전량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60	체리		5	수입전량
2008	7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1.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10	수입전량
			2. 기타	5	